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현상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장
sbhyun@kiep.go.kr

나수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선임연구원
syna@kiep.go.kr

김영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조고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kucho@kiep.go.kr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sbongk@dongduk.ac.kr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대응방향 및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 대외적, 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함.

-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한 이래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중국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직접금융의 육성, 선진 금융시스템 도입 및 금융 경쟁력 강화, 중국 국가전략과 금융시장 개방의 연계,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 미중 갈등의 격화와 미국의 대중국 금융개방 압력 등이 있음.

▶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는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살펴봄.

- 중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외자지분비율 제한 완화, 외자업무 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개방조치를 시행하는 반면, 주식 및 채권시장은 인바운드 위주 단방향의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중국 금융개방의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를 살펴봄.

-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서명 이후 양국간 통상분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 통상분쟁이 금융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됨.

▶ 중국 금융개방의 산업·기술 환경 변화로는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를 살펴봄.

- 중국정부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 표준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금융개방 확대는 한국 금융사와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한중 간 금융 협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국 금융개방 정책과 관련 관리감독 규정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한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에 따른 중장기 진출전략 마련 필요
- 한중 금융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체결 △파일럿 금융 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시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금융개방을 약속하고 개방 시간표도 제시하였지만, 제조업 등 다른 분야와는 달리 금융 분야의 개방은 더디게 진행**

- 중국 금융업 발전수준이 낮고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한 동시에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중국정부는 과감한 금융개방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여 왔음.
- 미국은 미중 경제전략대화를 통해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중국정부는 금융개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한 이래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최근 중국정부는 중국 금융서비스 효율 제고 및 외국자본 활용 등 대내적 요인과 미중 통상분쟁 심화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금융시장 개방을 본격화하기 시작
-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8년 보아오포럼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천명한 이후 은행, 자산운용회사의 외국지분 규제를 취소하고 증권, 펀드, 보험사 등의 외국지분 비율을 3년 내 취소할 것을 밝힘.
  - 그 이후 최근 3년간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개방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마련하였고, 금융개방은 범위와 속도 면에서 WTO 이후 10여 년간 금융개방보다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 대외적, 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함.**

- 대내적 환경 변화는 주로 중국 금융개방의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금융서비스 업권별로 살펴보고 자본계정 개방에 대해서도 분석
- 대외적 환경 변화는 미중 갈등 격화가 중국의 금융개방 추진과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 산업·기술 환경 변화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금융의 대외개방 현황을 살펴보고 미중 금융 경쟁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중국 금융시장 개방 배경

① 직접금융의 육성

- **중국은 전통적으로 가계자산이 은행예금에 예치되는 비율이 높음.**
  - 2016년 기준 중국 가계자산의 50%가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고, 25% 정도가 현금 및 은행예금이며, 주식·채권·증권투자기금에는 16% 정도만 투자되어 있음.

- **중국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현금 및 은행예금은 실물경제 주체인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중국 당국은 기업의 주식 및 채권시장을 통한 직접융자[1]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실물경제 부문 융자 루트의 다각화를 통하여 중국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외자유입을 유도하여 현재 하방국면에 있는 중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② 선진 금융시스템 도입 및 금융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개방 확대를 통해 글로벌 선진 경영 경험과 노하우를 학습하고 선진 금융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증대**
  - 중국의 국가 금융안전과 안정을 지켜나가면서 금융서비스업 개방 확대, 금융시장 제도 최적화, 국제 금융협력 심화 속에서 금융시스템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

- **특히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 소비금융, 양로보험, 건강보험 등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외자기업의 중국 진출로 금융상품 혁신 및 시장 활력 부여**
  - 이와 동시에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재무회계, 세수(税收), 관리감독 등 관련 제도를 국제화하고 통일된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금융 건전성 관리 및 리스크 통제 능력을 강화

1) 기업이 자기 내부자금 이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에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두 가지가 있다. 직접금융(direct financing; 直接融资)은 금융 중개기구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자금 융통 방식을 지칭한다. 즉 기업이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식·채권 등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이다. 반면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 间接融资)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을 말한다.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7%9B%B4%E6%8E%A5%E8%9E%8D%E8%B5%84/2359771?fr=aladdin(검색일: 2020. 11. 4).

③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유리한 글로벌 경제여건 형성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의 회복 속도와 통화정책 실시 강도의 차이로 인하여 중국 금융개방에 있어 양호한 환경이 조성됨.**
  - 연방준비기금(Fed)이 유동성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급격하게 낮아졌고(위안화 가치 절상), 미중 금리차는 더욱 확대
  - 선진국 대부분의 채권 수익률은 0%에 가까운 반면,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은 3%대로 중국과 선진국 간 채권 수익률 차이 확대

④ 중국 국가전략과 금융시장 개방의 연계

- **일대일로, 쌍순환 등 중국 국가전략 추진에 있어 필요한 금융개방을 통해 글로벌 금융 자원을 활용**
  - 중국 증권거래소가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지역 자본시장과의 실무협력을 심화하도록 지원하고, 선전 증권거래소는 파키스탄증권거래소와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
  -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금융 관리감독기구 협력을 통하여 고효율 관리감독 공조 기제를 구축
  - 국내·국제 쌍순환의 상호 촉진 작용을 확보하려면 자본항목을 포함한 금융시장 개방이 쌍순환 전략 추진에 있어 촉진제 역할

⑤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

-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규모의 국가로서 그에 걸맞은 글로벌 경제·금융 지위 및 영향력 확대 필요**
  - 중국 금융시장의 추가 개방을 통하여 글로벌 위안화 자산에 대한 흡인력을 높이고, 위안화 자산의 흡인력이 역외 위안화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며, 역내·외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 형성 기제의 내재적 개혁을 촉진하는 동력이 형성

⑥ 미중 갈등의 격화와 미국의 대중국 금융개방 압력

- **미중 통상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
  -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협상, 미중 경제전략대화 등에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중국의 실질적인 금융시장 개방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2) 금융서비스 업권별 개방 정책 및 현황

① 은행업

- **중국 당국은 2018년 은행업 · 보험업 개방 15개 조치를 발표하였고, 2019년에는 은보감회가 총 19개의 개방조치를 발표**
  - 은행감독 부문도 관련 법규 개정, 금융업 개방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외자유치와 업무범위 완화, 금융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발표
  - 이에 따라 은행업 분야에서 중자은행과 금융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외자지분 비율 제한이 정식으로 철폐되었고, 내 · 외자에 대하여 동일한 지분투자 비율 규정을 적용
  - 2019년 5월 중국 은보감회는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심사 · 비준 절차를 폐지하고 업무범위 제한 또한 전면 철폐
    - 외자 은행에 대한 업무범위 제한이 철폐되면서 은행이 증권업과 같이 본업 이외의 업무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업무범위를 확대 가능

표 1. 2018~19년 중국의 금융개방 조치

시기	기관	조치	내용
2018.4	은보감회	은행업 · 보험업 개방 15개 조치[2] (15条银行业保险业开放措施)	(1) 외자 투자편리화: – 중자은행과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외자지분비율제한 철폐(외자 100% 독자 허용) – 내 · 외자에 지분투자비율 규정 통일 적용 – 상업은행이 신규 설립한 금융자산투자회사 및 재테크 회사에 대해 외자지분비율 제한 미적용 – 신탁 · 금융리스 · 자동차금융 · 화폐중개 · 소비자금융 등 각종 은행류 금융기구의 경외전문투자자 유입 장려 – 외자 인보험(人身险)회사의 외자지분비율 51%까지로 완화(3년 후 폐지) (2) 외자기구 설립조건 완화: – 외국은행의 중국 내 자회사와 지점 동시 설립 허용 – 전국 범위 내 외자보험기구 설립 전 2년간 대표처 운영 요구 폐지 (3) 외자기구 업무범위 확대: –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신청 시 1년간 대기기간 요구 폐지 – 외국은행 지점의 정부채 발행 · 환매 · 인수 · 판매 대행 업무 종사 허용 – 외국은행 지점의 단일 위안화 정기예금 액수 하한을 10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하향 조정 –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내 보험대리 및 손해사정(保险公估) 업무 종사 허용 (4) 외자기구 관리감독 규칙 최적화: – 외국은행 지점에 대하여 병합심사(合并考核) 실시 – 외국은행 지점 영업자금(营运资金) 관리요건 조정
2019.5	은보감회	은행업 · 보험업 개방 12개 조치	– 내 · 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단일 중자은행과 단일 외자은행의 중자상업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비율 상한을 철폐 – 역외 금융기관의 신탁회사 투자 및 지분참여 시 10억 달러 총자산 요구 폐지 – 역외 금융기관의 중국 내 외자 보험회사 지분참여 허용 – 중외 합자은행의 중국 측 지배주주 요건 완화: 중국 측 유일 또는 주요 주주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요구 철폐 – 역외 금융기관과 민영자본이 지배주주인 은행업 보험업 기구의 지분, 업무 및 기술 등 각종 협력 장려

표 1. 계속

시기	기관	조치	내용
2019.7	은보감회	대외개방 7개 조치	- 외국 금융기관의 상업은행 재테크자회사 설립, 투자, 지분참여 장려 - 외국 자산관리기구가 중자은행 또는 보험회사 자회사와 합자 형식으로 외국인 지배주주 재테크 회사 설립 허용 - 외국 금융기구의 양로기금관리회사 설립 및 지분참여 허용 - 외자 100% 화폐중개회사(货币经纪公司) 설립 또는 지분참여 지지 - 외자 인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51%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과도기를 2020년으로 앞당김. - 중국 보험사의 보험자산관리회사 지분 비율이 75% 미만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폐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보유 비율 25% 이상 허용 - 외자 보험회사의 진입요건 완화, 30년 경영연한 요구 폐지
2019.10	국무원	외자은행관리조례 개정《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외자은행 경영형식 다양화(외자독자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동시 설립 가능, 중외합자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동시 설립 가능) - 외자은행 업무범위 확대(외자은행이 위안화 업무 처리 위한 심사비준 받을 필요 없음. 중국 내 정부채권 발행 및 차익실현 대리업무, 위탁판매, 수금 대행업무 허용) - 일부 업무의 진입조건 완화(예: 총자산요건 완화)

자료: 银保监会18个月推出34项对外开放举措 : 支持外资机构参与我国金融市场, https://xw.qq.com/cmsid/20191017A02BIU00(검색일: 2020. 10. 17); 조고운(2019)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② 증권업

- **중국 당국은 2018년 이후 외자지분비율 제한 완화, 외자 증권업 라이선스 업무 확대, 외국 신용평가사 중국시장 독자 진출 허용 등 다양한 개방조치를 발표 · 시행함.**
  - 중국 당국은 외자지분 100%의 증권회사 설립을 허용하였고, 외자가 이사회 통제권과 회사 정책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음.
    - 미국의 금융개방 압박의 영향으로 기존의 계획(2021년)보다 앞당겨지게 되어 선물회사, 기금관리회사, 증권회사에 대한 외자지분 제한은 각각 2020년 1월, 4월, 12월에 철폐됨.
  - 2018년 이후 중국 증감회가 외자 증권회사 라이선스 심사를 완화함에 따라 외자 증권회사가 증권중개, 자기매매, 자산관리, 투자자문 등 업무에 대한 라이선스 획득이 가능해짐.
    - 외자기구에 대하여 은행간 채권시장 A류 채권발행 주관업무 자격이 허용되어 역외 채권발행주체가 발행하는 판다채권은 물론 중자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발행주관 업무도 허용됨.
  - 2019년 7월에는 외자기구의 중국 내 신용평가 업무가 허용되어, 외자기구가 은행간 채권시장 및 거래소 채권시장의 모든 채권 종류에 대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짐.

2) 관련 문건:《关于进一步放宽外资银行市场准入相关事项的通知》및《关于放开外资保险经纪公司经营范围的通知》발표.

③ 보험업

● **2018년 이전까지 중국 보험업 개방이 주로 비(非)생명보험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면 2018년 이후에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개방이 확대되었음.**

- 2018년 외자 보험회사 설립 전 2년간 대표처 운영 요건이 폐지되었고, 2020년 인보험(人身险: 생명보험·건강보험·상해보험을 총칭)의 외자 지분비율 제한이 철폐됨.
- 이 외, 외자 보험회사의 진입제한, 외자 보험회사 주주 제한 등이 완화됨.

3) 자본계정 개방 정책 및 현황

① 주식시장

● **중국 당국은 QFII/RQFII 한도 철폐, 외국인 투자자 조건 완화 등 주식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바운드 위주 단방향의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

- 중국 당국은 금융서비스업 분야 개방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방식이므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증권투자 등 단기의 국제 자본 흐름은 국내 거시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어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음.
- QFII 및 RQFII 제도는 2018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관련 외환관리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고, 2019년 9월에는 QFII 및 RQFII 투자한도와 RQFII의 국가·지역 제한이 폐지됨.
  - 2020년에는 △QFII·RQFII 제도 통합 △QFII·RQFII 진입 자격조건 완화 △QFII·RQFII 투자 허용범위 확대 △수탁기관 관리 최적화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 등의 개방조치를 시행

그림 1. QFII 투자한도 조정 연혁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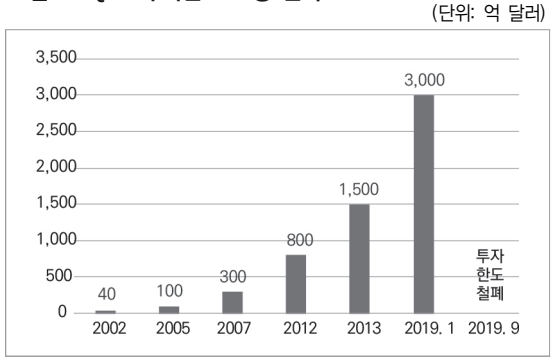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RQFII 투자한도 조정 연혁

(단위: 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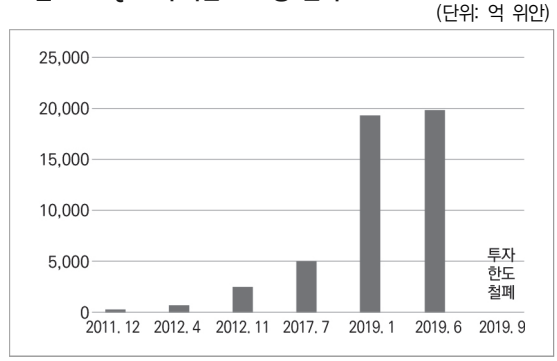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후강퉁(상하이-홍콩)·선강퉁(선전-홍콩)은 외국인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개인투자자 또한 중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경로로 활용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룬퉁(중국 상하이와 런던 증시 간의 교차거래 시스템), 중·일 상호 ETF 연결 조치 등 자본시장의 국제협력을 확대

그림 3. 중국 주식시장 개방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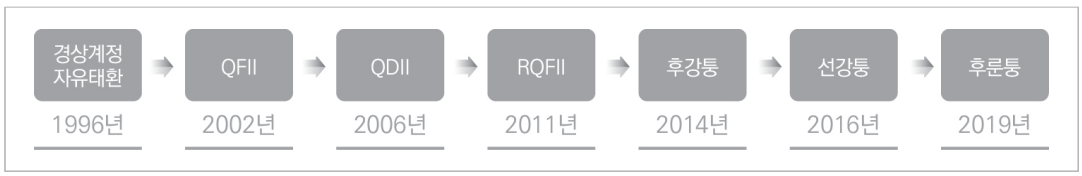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정리.

② 채권시장

- **중국 채권시장은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경로 확대, 편리화 및 절차 간소화를 실시하여 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나 인바운드 위주 단방향의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
  - 중국 채권시장은 최근 몇 년간 주요 글로벌 채권지수에 편입되면서 중국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유입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2019년 4월에는 중국 위안화 표시 국채와 정책은행채가 Bloomberg Barclays 글로벌 지수에 편입되었고, 2020년 중국 위안화 표시 국채가 JP Morgan 글로벌신흥시장국채지수(GBI-EM)에, 중국 국채가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러셀(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됨.
  - 기존 외국인 투자자는 △QFII · RQFII △CIBM Direct를 통해 중국 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었는데, 2017년 채권퉁(Bond Connect) 개통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도 기존의 홍콩 계좌를 사용하여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됨.
    - 현재까지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의 채권투자(北向通)에 대해서만 개방되었으며,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의 채권투자(南向通)는 개방되지 않아 아직 양방향 개통이 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

표 2. 중국 자본시장 개방 연혁(QFII 및 RQFII 관련 내용 제외)

시기	주요 개방 내용
1990.12	상하이증권거래소 설립
1991.7	선전증권거래소 설립
1992	외국인 전용주식 B주 개설
2003.10	중국공산당 제16기 3중전회: 중국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는 전제하에 초국경 자본거래 활동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자본계정의 태환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기로 함.
2005.2	중국인민은행 등 4개 부처 공동으로 《국제개발기구의 위안화채권 발행관리에 관한 임시방법[3]》 발표, 적격 국제개발기구의 중국 내 '판다채권' 발행 허용
2013.12	중국 인민은행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건설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4]》 발표, 자본계정 통제를 줄이기 위한 거시경제 발전 추진방향 제시
2014.11	후강퉁(沪港通) 정식 개통: 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거래 시스템 개시
2016.12	선강퉁(深港通) 개통: 중국 선전과 홍콩 증시 간의 교차거래 시스템 개시
2017.6	중국 A주 MSCI 신흥국시장(EM) 지수 편입: 중국 A주 230개 종목의 시가총액 2.5%를 편입(2018년 6월부터 시행)

표 2. 계속

시기	주요 개방 내용
2017.7	채권퉁(债券通) 개통: 중국 본토와 홍콩 간 채권 교차거래 시스템 개시
2018.5	후강퉁, 선강퉁 일일 투자한도 각각 4배 확대 (후구퉁 130억 위안→520억 위안, 선구퉁 105억 위안→420억 위안)
2018.8	중국 A주 MSCI 신흥국시장(EM) 지수 추가 편입 (중국 A주 230개 종목의 시가총액 2.5%를 추가 편입)
2018.9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A주 상장사의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스톡옵션을 받은 외국인 직원에게 A주 증권계좌 개설 및 거래 허용(중국 거주 여부 불문)
2019.1	S&P 다우존스지수(S&P DJI)에 중국 A주 편입(2019년 9월 23일부터 거래 시작)
2019.4	Bloomberg Barclays 글로벌 지수에 중국 채권 편입
2019.5.28	중국 A주 MSCI 신흥국시장(EM) 지수 추가 편입: 5%→10% (연내에 20%로 편입 완료 예정)
2019.6.17	후룬퉁(沪伦通) 개통: 중국 상하이와 런던 증시 간의 교차거래 시스템
2019.6.24	FTSE Russell 중국 A주 지수 편입(富时罗素全球股票指数)
2019.6.25	중·일 ETF 상호 정식 개통(中日ETF互通正式开通)

자료: 国家发展改革委员会 国际合作中心 对外开放课题组 着(2018), pp. 216~217; 조고운(2019),「최근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추진 현황 및 평가」, pp. 15~16; 《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期货投资资金管理规定》, http://www.gov.cn/ zhengce/zhengceku/2020-05/07/content_5509577.htm(검색일: 2020. 6. 30).

4) 미중 갈등 격화와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① 미국의 대중 금융개방 압력 확대

-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본격적인 개방에 합의하였으나, 약속 이행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개방 확대 요구는 지속됨.**
  - 미국은 중국 국유 대형 상업은행 및 정책은행이 전체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구조에서 시장 왜곡을 낳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되어 결국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불만과 우려를 제기함.
  - 미국은 미중 합동상무위원회(JCTT), 전략경제대화(SED), 전략 및 경제대화(S&ED), 포괄적 경제대화(CED)와 같은 양자 협의체는 물론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중국의 금융개방을 지속 요구

3) 国际开发机构人民币债券发行管理办法.
4) 关于金融支持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设的意见.

②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 확대

● **미중 간 1단계 무역협정 합의에 의해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이 보다 확대될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미국 금융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금융시장 진출장벽을 폐지하고 금융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는 조치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합의사항들은 양국간 1단계 무역협정 제4장에 종합적으로 명시됨.

표 3. 미중 간 1단계 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분야 주요 내용

분야	주요 합의사항
	- 미국 서비스업체의 준비작업 완료 통지 후 1개월 내 중국은 마스터카드,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미 업체의 허가 신청을 접수함. - 미국은 유니온페이를 포함 중국 전자결제서비스 업체에 대해 비차별 대우 합의
금융자산 (부실채권) 관리 서비스	- 양국은 부실채권 정리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기회를 인정하고 관련 분야 협력 촉진 합의 - 중국은 미국 부실채권 정리 전문 금융사의 중국은행 부실채권 직접 인수를 위해 지방 면허부터 허용 - 국가 면허 발급 시 비차별적 기준 적용 방침 - 미국은 중국 금융서비스 업체의 미국 내 부실대출 인수 및 정리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
보험 서비스	- 2020년 4월 1일까지 생명 및 보건, 연금보험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 폐지, 모든 보험 부문의 규제 요건 및 절차 폐지, 보험서비스 영업 심사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승인 절차 도입 - 미국은 중국재보험그룹(China Reinsurance Group)을 포함 중국업체의 영업허가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
증권, 펀드, 선물 서비스	- 중국은 2020년 4월 1일까지 증권, 편드, 선물사의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를 폐지, 100% 독자 미 금융사 참여 허용 - 중국은 2019년 7월 5일 증권서비스 공급업체 대주주의 순자산 가치 요건을 축소한 점을 재확인 - 양국은 증권, 펀드, 선물사의 영업신청서를 차별 없이 검토 승인하고, 일국에서 영업허가를 획득한 회사는 상대국가에서도 영업 제공 자격 획득 인정 - 양국은 상호간 민간 펀드사의 차별적 제한을 제거하기로 함 - 중국은 H주식 투자 미국 민간 펀드사에 대한 금지를 폐지, 적격 미 민간펀드사의 사례별 투자 자문 제공 서비스 승인 - 또한 중국은 기존 미국계 투자 증권 합작사가 미국 과반 지분 소유 및 독자사로 될 경우 기존 면허 유지를 인정 - 미국은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를 포함 중국 금융기관의 영업허가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

자료: USTR(2020b), pp. 4-1~4-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20년 4월 1일부터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가 철폐되는 보험, 증권, 펀드, 선물 분야는 물론 전자결제 및 신용평가 서비스에 대한 외국 금융사의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계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투자은행기관들의 적극적인 중국시장 진출이 감지됨.
  -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을 비롯 Vanguard, JPMorgan,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 미국계 금융사들은 중국 내 독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과반 지분을 확보함.

●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서명 이후 양국간 통상분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 통상분쟁이 금융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됨.**

- 미국의 대중국 금융 디커플링에는 미국의 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및 미국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하고 자국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음.

◦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투자를 강력하게 규제할 근거를 마련

◦ 2022년 1월 1일까지 미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상장을 폐지하고 신규 상장을 금지

◦ 미국 연방기금은 2020년 중반부터 TSP I 펀드의 약 8%(45억 달러)를 중국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의 반대로 2020년 5월 이러한 결정이 중단된 상태

- 향후 미중 금융 갈등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나, 전면적인 통상분쟁이나 완전한 디커플링으로 이어지기 이전에 양국은 갈등해소를 위한 협상 노력도 병행하는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③ 미중 갈등 이후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 변화

● **2020년 5월 중국정부의 「홍콩보안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미중 간 갈등의 새로운 핵심 이슈로 부상함.**

-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철회로 인한 글로벌 금융기관과 자본의 홍콩 탈출은 당초 우려와 달리 급격한 이탈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음.

- 오히려 중국기업의 홍콩 IPO 증가, 중국자본의 홍콩 유입 증가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단기간 내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홍콩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해온 요인인 환율 안정과 외환거래 자유, 낮은 세율, 중국 비즈니스의 관문, 자유로운 사업 환경과 유연한 노동시장 등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음.

- 다만 홍콩이 미중 갈등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홍콩 내 또는 해외 금융기관은 미중 간 금융 갈등 양상에 따라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대한 대비 필요

그림 4. 중국→홍콩 순유입액 추이(Southbound)

(단위: 억 홍콩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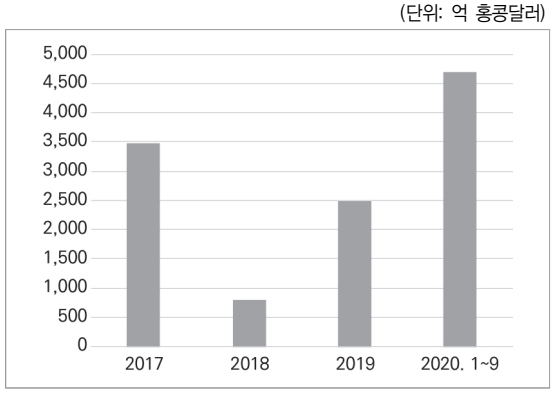

자료: CEIC DB(검색일: 2020. 10. 17).

그림 5. 강구퉁의 거래소별 순유입액(Southbound)

(단위: 억 홍콩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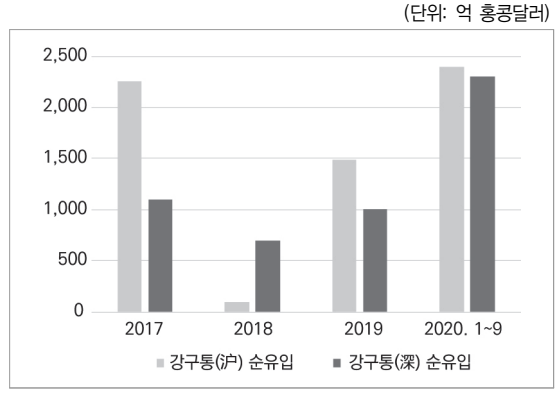

자료: CEIC DB(검색일: 2020. 10. 17).

5)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

①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현황과 특징

- **중국 디지털 금융은 크게 △디지털 지급결제 △P2P 온라인 소매 대출 △온라인 재테크 △온라인 은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P2P 대출은 성장둔화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분야에서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은 비은행 지급결제사들이 은행의 지급결제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인터넷 지급결제가 모바일 지급결제로 대체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온라인 은행은 2016년 텐센트의 위뱅크(微众银行), 알리바바의 마이뱅크(网商银行)를 시작으로 샤오미의 신왕뱅크(新网银行) 등 17개로 확대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② 중국 디지털 결제의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확대

- **중국 국내 디지털 금융의 빠른 발전을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분야의 대외개방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중국 온라인 금융사들의 아세안 온라인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2018년 이후 중국의 온라인 결제시장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디지털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타진되고 있으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9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를 이루고 있어 외국계 금융사들의 어려움이 예상됨.
  - 지난 수년간 알리페이 등의 비은행 지급결제회사의 국제결제 업무는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중국 내 위안화 인출과 해외 현지통화 지급이 동시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알리페이 플랫폼 내에서 개인간 위안화 자금 흐름으로 국제결제가 완결될 수도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음.

표 4. 알리페이의 모바일 결제 국제협력 사례

국가	모바일 플랫폼명	국가 인구(2019년)	협력관계 구축 시기
중국	알리페이(Alipay)	14억 명	2004년 설립
필리핀	지캐시(GCash)	10.9억 명	2017년 2월
홍콩	알리페이홍콩(AlipayHK)	755만 명	2017년 5월
방글라데시	비캐시(bKash)	1.6억 명	2018년 4월
인도	페이티엠(Paytm)	13.8억 명	2015년 2월
한국	카카오페이(Kakaopay)	5,178만 명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터치앤고(Touch'n Go)	3,236만 명	2017년 7월
태국	트루머니(TrueMoney)	6,980만 명	2016년 11월
인도네시아	다나(DANA)	2.7억 명	2017년 4월
파키스탄	이지파이사(easypaisa)	2.2억 명	2018년 3월

자료: 서봉교(2020),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모바일 국제결제 QR코드 호환과 한국 모바일 결제의 국제화」, 『동북아 경제연구』,32권 2호, p.105.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중국 및 아세안 모바일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QR코드 국제결제 호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③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

● **중국정부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 표준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미국의 국제금융 헤게모니 약화와 중국 디지털 금융의 부상을 기회 삼아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 중국이 동남아 주변 국가들과 모바일 국제결제 플랫폼 협력을 통한 QR코드 상호호환을 통한 국제결제의 새로운 표준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일대일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 중국 내 많은 변경 지역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변국과의 변경 무역에서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이 국제결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
- 데이터의 초국적 이동, 데이터 플랫폼 규제, 미국의 SWIFT와 중국의 CIPS 국제결제 시스템, 미국 신용카드 국제결제와 중국 QR코드 호환 국제결제 등 디지털 금융의 국제표준 구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 블록과 국제금융 블록의 등장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은 홍콩 역외위안화를 활용한 모바일 QR코드 호환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화폐(DCEP) 연계를 통한 국제결제 플랫폼 구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3. 대응방향 및 정책 제언

1) 중국 금융개방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

● **은행업: 현지화 · 로컬화 ·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발휘**

- 중국의 금융환경에 맞는 규범 준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와의 관계, 특히 지방정부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법 ·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혁신을 꾀하여 중자은행과 차별화된 경쟁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증권업: 글로벌 자원의 통합 능력과 서비스 거래 능력의 배양**

-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증권사는 자사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 개발을 통하여 중국 증권

업 진출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산업의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국 금융시장 규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기업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중국 금융 전문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보험업: 지방정부와의 관계 형성을 통한 영업 네트워크 확보

-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하여 경영성과를 내려면 보험업의 특성상 중국 전역에 걸친 넓은 영업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중국 중소형 보험회사들에 대한 지분 인수와 이를 위한 지방정부, 지방금융회사, 지방은행이라는 점에서 이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중국시장 진입을 확대할 수 있음.

주식 및 채권시장: 중국 당국의 외환 관리감독 및 중국 증시 변동성 리스크 주의

- 중국 증권, 선물 투자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범위가 확대되었고 외자 금융사들은 투자리스크 해지 목적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중국당국이 '거시건전성 감독 원칙'에 따라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금융시장 관리감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미중 갈등에 따른 금융개방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중국 금융개방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동시에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대응수단이기도 함.

- 미중 갈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융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중국 금융개방 확대에 따라 한국 금융기관은 중국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나 한국 금융사들의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안목으로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금융 수요에 대해 중국이나 외국 금융기관 등과 규모로 경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높은 수준의 자산관리 서비스나 독특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대응
- 중국 내에서 한국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중국 금융사와 협력하는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자본시장이 양방향으로 개방될 때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 금융제도, 중국인의 금융수요 등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보유한 중국 금융 전문가를 육성하고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중국의 자산운용 분야에서 기회가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 자산가들의 해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면 한국 및 아시아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한국 금융사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홍콩이 새로운 미중 갈등지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금융허브 위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서울과 부산의 기회요인을 재점검하고 우리의 금융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양적·외형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국제경쟁력과 글로벌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
  - 금융중심지 사업 내실화를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서울과 부산에 특화된 지역별 전략 수립 등과 더불어 금융부문의 규제 완화, 금융연관산업 발전 지원, 글로벌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

3) 중국 디지털 금융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대응방향

- **중국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 2018년 이후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시장 개방과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전략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 2018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된 이후 중국은 선제적으로 자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금융사들은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을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부족
  - 한국 금융사들이 중국사업에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과 주변국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 협력 확대는 한국의 디지털 금융산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이 한국 내에서 상당한 기반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과 O2O 비즈니스 모델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최근의 국제규범 제정에 주목하여 단순한 개별 플랫폼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비전과 명확한 국가전략 수립 필요**

4) 한중 금융협력 관련 정책제언

- **한중 경제대화 채널에서 금융협력에 대한 논의 확대**
  - 중국은 중미 경제전략대화, 중영 경제재정금융대화, 중일 등 주요 국가와의 정부간 경제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이러한 채널은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금융사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기존의 한중 경제대화 채널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한중 금융협력 대화 채널을 신설하여 한중 금융협력 방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사들의 애로사항 논의 확대 필요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 중국의 금융개방에 따라 중국 금융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장 간의 연계가 강화될 전망으로 한중 양국은 양국간 또는 아시아 역내에서 금융안정 및 상호 금융 발전을 위해 정책 당국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금융협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
- 한중 간 주식시장, 외환시장에서의 동조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례적으로 금융안정과 금융리스크 국가간 이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한중 간 금융안정 협의체를 구축하여 중국발 금융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를 통해 한중 정책 당국 간에는 통화스와프 지속 및 활용도 제고, 원-위안 직거래 활성화 등 통화협력, 다자 차원에서는 미국의 환율 압박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 아시아 역내 금융안정체제 강화 방향으로 한중 금융협력 증진을 추진
  - ○ 중국이 본격적인 금융시장 개방 및 자유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먼저 경험한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된 금융시장 및 시스템 구축에 있어 협력을 추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체결 및 파일럿 금융 협력사업 추진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금융부문 개방 등의 방향으로 금융협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매년 중국의 서비스 및 금융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개방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홍콩 CEPA와 같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을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는 협상 채널을 구축할 필요성 증대
- 한중 FTA 협정이 한중 금융협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FTZ, 금융종합개혁시험구 또는 한중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중국의 FTZ 또는 금융종합개혁시험구에서는 선도적인 개방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의 FTZ, 금융종합개혁시험구 정책을 활용하고 한국의 기업,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한국 맞춤형 금융개방조치를 제안

중국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 한중 경제협력은 기존의 GVC에서 분업하는 협력에서 중국 금융개방 확대라는 시대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은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기존과 다르게 금융투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 미국과 일본 자본이 한국의 우수 제조업체의 지분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듯이, 한국의 자본도 발전 잠재력이 큰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

- 이러한 협력방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한중 간 금융투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편리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
  - ○ 특히 미래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차세대 정보통신, 첨단장비, 신에너지, 바이오 의약 분야의 신생기업에 대한 연구와 협력 확대 필요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사들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중국 금융시스템과 중국 금융 비즈니스 문화 및 관행을 이해할 수 있는 중국 금융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것임.
- 중국의 금융시장 규모와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중국 금융 인재 양성을 기업과 민간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국 금융 관련학과 개설 등을 통한 교육 확대와 중국에 진출한 금융사에서 전문인력의 인턴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금융을 모두 잘 이해하는 한중 금융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KIEP